

고충처리위원회세칙

2007년 1월 29일 제정 2009년 9월 9일 개정 2011년 12월 13일 개정 2015년 12월 17일 개정

현행안	개정안
총 칙 제1조 (명칭) 본 세칙은 현대위아지회(이하 "지회") 규칙 제24조 (고충처리위원회) 의거하여 고충처리 위원회 세칙으로 제정한다. 제2조 (목적) 본 세칙은 고충처리위원회의 조합원과의 상담을 통해 고충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. 제3조 (구성) 지회장과 지회장이 임명한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. 제4조 (기능) 1. 조합원과 상담 고충 내용파악. 2. 조합원의 고충처리 1) 고충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것에 아무런 제한도 가하지 않는다. 2) 고충이 노사간 해결해야 할 문제는 노사협의회에 위촉한다. 3) 인사에 관한 사항. 4) 고충처리는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본인에게 결과를 홍보한다. 부 칙 제5조 (시행) 본 세칙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 제6조 (통상관례) 본 세칙의 미비한 점은 통상관례에 의한다.	